

수원고등법원 2023. 7. 20 선고 2022나26560(본소), 2023나10852(반소) 판결

[부동산매도청구 · 매매대금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

A 리모델링주택조합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담당변호사 신동일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

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바른 담당변호사 최문기

변 론 종 결 2023. 6. 1.

판 결 선 고 2023. 7. 20.

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. 11. 15. 선고 2019가합401789 판결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가.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본소 청구 감축에 따라 아래 나.항과 같이 변경되었다.
나.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로부터 754,800,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, 원고(반소피고)에게 별지 목록 순번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3. 13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순번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
3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3. 13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(반소원고)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.
4.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(반소원고)가,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(반소피고)가 각 부담한다.
5. 제2의 나.항 중 인도를 명한 부분과,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본소

가. 청구취지

주문 제2의 나.항 기재와 같다{원고(반소피고)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}.

나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(반소원고)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(반소피고)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반소 청구취지

주문 제3항 기재와 같다.

이 유

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.

1.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

같은으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.

나. 고쳐 쓰는 부분

- 제1심판결의 “원고”를 “원고(반소피고)”로 고쳐 쓰고, “피고 C”를 “피고(반소원고)”로 고쳐 쓴다.
- 제1심판결 제12쪽 3행 “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” 부분부터 같은 쪽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.

『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9. 27. 채무자 G, 근저당권자 I 주식회사, 채권최고액 8,4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, 2023. 1. 6. 채권최고액 부분이 7,220만 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로부터 754,800,000원(= 매매대금 827,000,000원 -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2,200,000원)을 지급받음과 동시에, 원고(반소피고)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3. 13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』○ 제1심판결 제12쪽 하4행 “707,000,000원”을 “754,800,000원”으로 고쳐 쓴다.

2.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

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 한다)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 한다) 사이에 2019. 3. 13.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, 그 매매대금이 827,000,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, 피고가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상환이행 의무로서 부담하고 있음은 피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,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3. 13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,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피고가 반소로서 구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원고는, 피고의 반소제기에 부동의하였으나,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및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이미 충분히 심리되었다고 보이므로, 항소심에서 반소제기를 원고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원고가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을 염려는 없다고 판단된다).

3. 결론

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.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(다만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이 위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2의 나.항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).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제정, 판사 이봉락, 판사 김대권

별지

목 록

1. (1동의 건물의 표시)

성남시 분당구 [] [] 아파트 [] 동

[도로명주소] 성남시 분당구 []

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

1층 335.44㎡, 2층 337.31㎡, 3층 337.31㎡, 4층 337.31㎡, 5층 337.31㎡, 6층 337.31㎡, 7층 337.31㎡, 8층 337.31㎡, 9층 337.31㎡, 10층 337.31㎡, 11층 337.31㎡, 12층 337.31㎡, 13층 337.31㎡, 14층 337.31㎡, 15층 337.31㎡, 지층 341.49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성남시 분당구 [] 대 46612.1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6층 []호 철근콘크리트조 67.43㎡

(대지권의 표시)

소유권대지권 46612.1분의 48.3893

2. (1동의 건물의 표시)

성남시 분당구 [] [] 아파트 [] 동

[도로명주소] 성남시 분당구 []

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

1층 335.44㎡, 2층 337.31㎡, 3층 337.31㎡, 4층 337.31㎡, 5층 337.31㎡, 6층 337.31㎡, 7층 337.31㎡, 8층 337.31㎡, 9층 337.31㎡, 10층 337.31㎡, 11층 337.31㎡, 12층 337.31㎡, 13층 337.31㎡, 14층 337.31㎡, 15층 337.31㎡, 지층 341.49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성남시 분당구 [] 대 46612.1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9층 []호 철근콘크리트조 66.60㎡

(대지권의 표시)

소유권대지권 46612.1분의 47.7936. 끝.

